



품목별 원산지기준 활용

산업용 로봇의 품목분류
(HS 2022 개정사항 반영) 및
원산지 결정기준 활용

허성빈 관세법인 보강 관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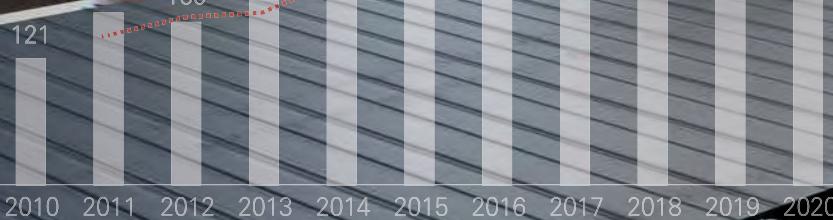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산업용 로봇의 품목분류 (HS 2022 개정사항 반영) 및 원산지 결정기준 활용



허성빈
관세법인 보강 관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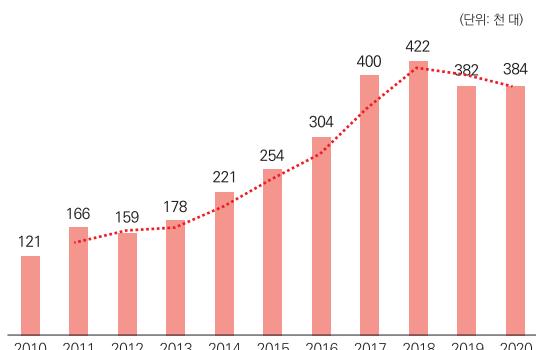
HS코드 개정은 FTA 활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기업에서 FTA 활용을 위해서는 수출입통관 시 유효한 HS코드(HS 2022)를 기준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FTA 협정별 원산지결정 기준연도 및 HS코드 연계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기발효된 개별 FTA협정 상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수 국가와 모두 통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MEGA FTA인 RCEP의 경우 원래 취지에 맞게 빠른 시일 내에 원산지결정기준 기준연도를 HS 2022 기준으로 개정하고, 지속적으로 최신 HS 코드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FTA를 활용 하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 된다.

“로봇이 친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과학적, 철학적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이미 맞벌이 부부에게 필수라고 불리는 로봇청소기, 최근 CES 2022 행사에서 국내 대기업이 선보인 지능형 로봇개까지 이미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산업군에서 로봇의 개발과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 산업용 로봇 연간 신규 설치대수]



* 자료 : IFR(2021)

이러한 새롭고 다양한 로봇의 등장은 가까운 미래에 우리 인류에게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이 같은 변화는 빠르면, 다음 HS코드 개정 시에는 “로봇”的 4단위 특별호*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본다.

* 특별호: HS코드 품목분류상 4단위 기준으로 품명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기된 것을 말한다(예: 3D 프린터는 HS 제8485호 적층제조기계)

본 고에서는 로봇 중에서도 최근 개정된 HS 2022에도 반영이 된 “산업용 로봇”的 분류와 이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 활용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HS 2022 (7차 개정)

HS 협약은 세계관세기구(WCO) 주관 하에 제·개정되어 왔다. 별도 규정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5년 주기로 개정되고 있으며 금년(2022) 1.1.부터 HS 2022를 확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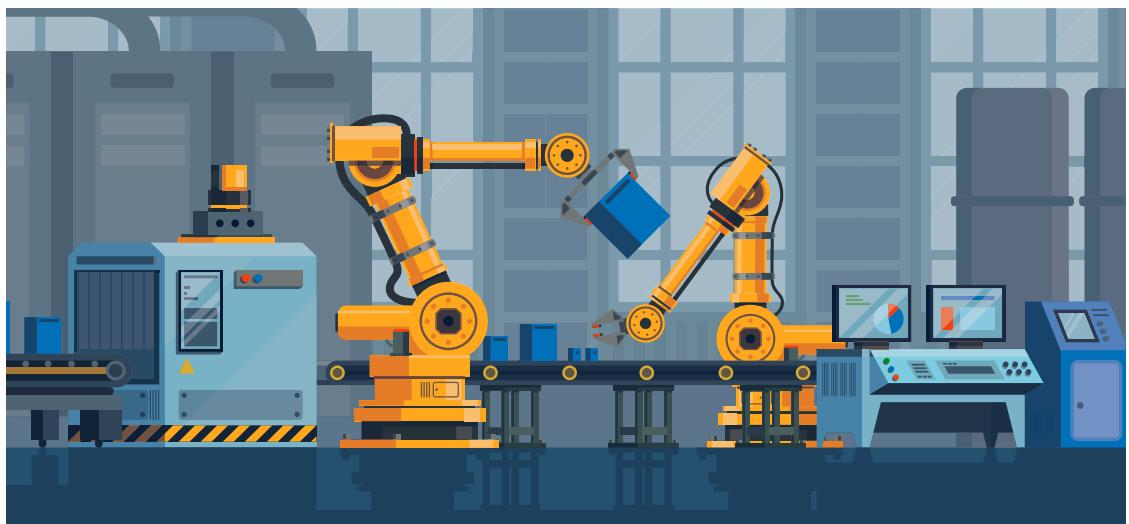
금번(7차) 개정의 주요 배경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중 민간 산업분야와 군사적 목적으로 둘 다 사용이 가능(군민양용; dual use)한 전략 물자에 대한 국제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불법 무기제조 등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관련물품을 HS 품목분류표에 폭넓게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러한 흐름의 하나로 산업용 로봇의 HS 코드가 새롭게 신설되었다.

[HS 주요 개정 배경 및 내용]

구분	주요 개정개요	주요품목 (신설)
7차 개정	IT 첨단기술 제품 신설 및 식량자원 확보, 환경보호, 불법 무기 등의 국제모니터링을 위한 주요품목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드론, 3D 프린터 - 전자담배, 반도체 트랜스듀서 - 식용곤충, 탄소섬유, 산업폐기물 - 군민양용 물품 (야간 감시카메라 등)

* 출처: 2022년 HS 개정내용 해설 기획재정부



2. 산업용 로봇의 품목분류 및 사례

HS 코드에서는 (제8479호 해설 참조) 산업용 로봇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산업용 로봇은 순환운동을 반복하여 수행하도록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자동기계이다. 산업용 로봇은 수평이나 수직위치에 고정시킨 사람 팔의 구조와 유사한 연계구조이며, 공구홀더용 이동성 홀더 끝단으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다(일반적인 수직형 로봇). 또한, 그들은 수직축으로 움직이는 직선형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선형 구조의 홀더는 수평축으로 움직이는 조작 장치의 종단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수평형 로봇). 이러한

로봇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빔이 장착될 수 있다(빔 로봇)'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산업용 로봇 전부가 새롭게 분류되는 4단위 HS 코드가 신설된 것은 아니다. 기존에도 따로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산업용 로봇은 제8479.50호에 분류되어 왔으며 기타의 산업용 로봇은 주요 기능, 범용성 여부 등에 따라 분류하였다. 다만, 개정된 HS 2022에서는 분류기준을 유지하되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된 산업용 로봇인가?

YES ↘

특정 기능에 따른 해당 호
(예: 제8424호·제8427호·제8428호·
제8486호나 제8515호)

NO ↘



8479.50
(산업용 로봇)



8427.10 신설!
(포크리프트 AGV)



8428.70 신설!
(기타 무인운반로봇)

[예시: 주요 산업용 로봇의 분류]

HS코드 (4단위)	품명	설명(호의 해설 발췌)
제8427호	포크리프트 트럭, 그밖의 작업트럭	권양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된 것으로 한정 * 제8427.10-3000호 : 무인운반로봇(A.G.V)
제8428호	그 밖의 권양용, 취급용, 적하용, 양하용 기계류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기계와 취급용 기계를 제외하고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를 포함한다. * 제8428.70호: 산업용 로봇(적재용 로봇, 무인운반로봇, 기타) - 제8479.50호과 제8427호의 것을 제외
제8479호	기타 기계류	이 호(제8479.50호)에는 단순히 서로 다른 공구를 사용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만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된 산업용 로봇은 제외한다.



3. 산업용 로봇의 원산지 결정기준

본 고에서는 신설된 제8428.70호*의 기타 무인운반로봇(예시)을 기준으로 원산지결정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 8428.70 : 무인운반로봇 automatic guided vehicle(8427에 분류되는 AGV 제외)

가장 먼저, 원산지결정기준의 기준연도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협정별로 상이하며 아래와 같다.

아래 표를 바탕으로 무인운반로봇의 FTA 협정은 아세안, EU로 가정하여 원산지결정 기준을 살펴보자.

제8428.70호은 신설된 호로서 위에서 살펴본 모든 협정기준으로 확인하였을 경우에도 HS 2022 기준으로 발효된 협정은 없다.

따라서 우리는 HS코드 개정 차수 간을 이어줄 수 있는 사다리, 즉 HS코드 연계표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관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계표는 ① HS 2017 → 2007, ② HS 2017 → 2012, ③ HS 2022 → HS2 017 총 3가지이다.

[FTA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기준연도]

원산지결정기준 기준연도	협정
HS 2007	EU, 터키, 뉴질랜드, 인도, 폐루, 영국
HS 2012	EFTA, 미국, 베트남, 캐나다, 콜롬비아, 호주, 중국, 칠레, 싱가포르, 중미, RCEP
HS 2017	아세안, ATPA

* 출처: 관세청

[HS 2022 → HS 2017 연계표 8428.70]

2022 Version	2017 Version	remark
8428.70	ex8428.90	New subheading 8428.70 has been created to facilitate the monitoring and control of dual use items (industrial robots).
8428.90	ex8428.90	

* HS 2017 HS 2022 WCO 연계표 발췌 (한글버전은 추후 공지 예정)

가) 한-아세안 FTA 가정

HS코드 기준연도는 2017버전이다. 따라서 HS 2022 → 2017 연계표를 확인하면 HS 8428.90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CTH or RVC40 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나) 한-EU FTA 가정

HS코드 기준연도는 2007버전이며,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두 번의 단계를 거쳐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해야 되며(Step1: 2022 → 2017, Step2: 2017 → 2007) 제8428호는 Step2에서는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가)에서와 같이 HS코드 제8428.90호로 CTH or MC 45로 확인된다.

* HS 2017 → 2007 연계표 기준 HS 제8428호는 변경사항이 없음

[무인운반 로봇(연계표 기준 제8428.9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협정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RCEP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것	CTH or BU 40 or BD 40
중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BU 30 or BD 40
미국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아세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 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BU 40 or BD 40
E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CTH or MC 45
칠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45 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CTH + BD 45 or CTH + BU 30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협정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E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3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CTH or MC 50
터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CTH or MC 45
호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BU 40 or BD40
캐나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중국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BD40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페루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CTSH
인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CTSH + BD 35
뉴질랜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집적법으로 30%,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BU 30 or BD 40
베트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BU 40 or BD 40
콜롬비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BU 30 or BD 40
영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CTH or MC 45

* 출처: FTA 협정문 기초로 작성

4. 맷음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HS코드 개정(신설, 변경, 삭제 포함)은 FTA 활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기업에서 FTA 활용을 위해서는 수출입통관 시 유효한 HS코드(HS 2022)를 기준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FTA 협정별 원산지결정 기준연도 및 HS코드 연계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기발효된 개별 FTA협정 상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수 국가와의 협정/협상, 발효

시점의 차이 등에 따라 기준연도를 모두 통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MEGA FTA인 RCEP의 경우 원래 취지에 맞게(예: RCEP 협정에서는 모든 참가국이 동일한 원산지결정기준 적용) 빠른 시일 내에 원산지결정기준 기준연도를 HS 2022 기준으로 개정하고, 지속적으로 최신 HS 코드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FTA를 활용하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